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체 육 진 흥 과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구포동생활체육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지방자치법」 제117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2

5)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6)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

다. 위탁 사무 내용 :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전반

라. 위탁시설

1) 시 설 명 : 구포동생활체육공원

2) 소 재 지 : 구미시 옥계2공단로3길 133(구포동 1191)

3) 규 모 : 부지면적 28,052㎡, 연면적 1,916㎡(지상 2층)

4) 주요시설 : 테니스장 6면(실내 2면, 실외 4면),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등

구 분		주 요 시 설	비 고
관리동	1층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및 탈의실 등	
	2층	사무실, 휴게실, 편의시설	
축구장		인조잔디(1면) 규격105×68m	
풋살장		인조잔디(1면) 규격20×40m	
실외테니스장		인조잔디(4면)	
실내테니스장		실내 인조잔디(2면)	
다목적구장		족구장 및 배구장 (1면), 농구장(1면)	

마.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427,093천원(2027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성과평가 및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아.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2026. 8. 19.)

자.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구미도시공사)

3. 부서의견

가. 구포동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성과 편익증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구미도시공사는 12년간 구포동생활체육공원을 관리·운영해 온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생활체육시설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2

5)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6)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및 감사결과

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마. 비용추계서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성과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26. 8. 14.(금)

○ 대　　상 :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 위탁기관 : 구미도시공사

○ 대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이행,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시설 운영의 적정성, 시설 유지관리 등

○ 평 가 자 : 2명(체육시설1팀장, 담당자)

○ 평가방법 : 운영 점검 및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함

2. 평가결과

○ 평가결과 : 87점(100점 만점)

구분	공통분야(45점)				개별분야(55점)			
총점	사업 계획 (10)	예산 관리 (15)	조직 및 인력관리 (10)	성과 관리 (10)	시설 운영관리 (20)	사업 추진 (15)	안전 관리 (10)	만족도 (10)
87	9	13	8	9	17	12	10	9

○ 총　　평

· 축적된 시설 관리·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설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음

·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시설 이용 과정에서 접수되는 각종 의견과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를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음

2026년도 공공위탁사무 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부 서 명 : 체육진흥과

○ 위탁사무 :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 감사기간 : 2026. 8. 10.(월)

○ 감사범위 : 운영 전반

○ 감 사 반 : 2명(체육시설1팀장, 주무관)

○ 감사방법 : 실지감사

2. 감사결과

○ 지적사항 : 0건

○ 처분내용 : 시정 0건, 주의 0건

감사내용 (검토 또는 조치사항)	조치계획(의견)	비고
공공위탁사무 감사결과 위·수탁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구포동생활체육공원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특이사항 없음	해당없음	

공공위탁사무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일　　시 : 2026. 8. 19.(수) 15:00

○ 장　　소 : 구미시 체육회관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심의위원 7명

○ 대　　상 :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 내　　용 : 공공위탁사무 수탁기관 재계약 여부 및 적격 심의

○ 방　　법 : 심의 평가기준에 의한 배점

· 심의기준 : 2개 분야, 7개 항목

· 채점방식 : 심의위원 평가점수 합산·평균

· 결정방법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및 참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심의 결과 '적격'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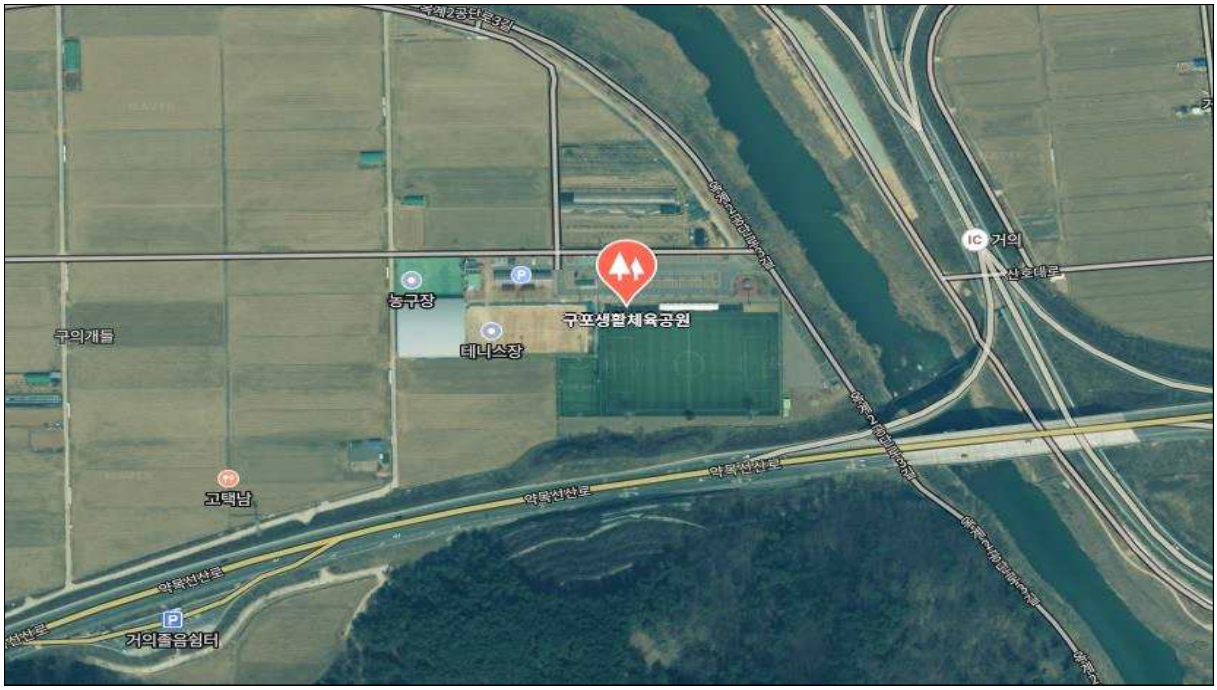
2. 심의결과

○ 평균점수가 92점 및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미도시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위원 / 심사대상	A	B	C	D	E	F	G	합계	평균점수 (최고·저 점수 제외)	비고
구포동생활 체육공원 관리·운영	97	93	93	100	89	80	88	640	92	

사진대지

□ 위 치 도



□ 현장 사진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6조(의회 동의)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공공위탁 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재정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 기준에 준하여 산정함
-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기타사용료	206,000	206,000	216,000	216,000	226,800	1,070,800
	소계(a)	206,000	206,000	216,000	216,000	226,800	1,070,800
세출	○전출금	427,093	439,906	453,103	466,696	480,697	2,267,495
	소계(b)	427,093	439,906	453,103	466,696	480,697	2,267,495
□ 총 비용(a-b)		△221,093	△233,906	△237,103	△250,696	△253,897	△1,196,69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427,093	439,906	453,103	466,696	480,697	2,267,495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427,093	439,906	453,103	466,696	480,697	2,267,495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1팀 이인호(☎480-491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합 계		**427,093,000**	
인건비	**소계**	**224,086,000**	
	보수	51,506,000	
	공무직근로자보수	94,612,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등	44,502,000	
	퇴직급여	16,566,000	
	평가급	16,900,000	
물건비	**소계**	**112,782,000**	
	일반운영비	43,314,000	
	여비	5,760,000	
	재료비	1,050,000	
	수선유지비	23,058,000	
	동력비	38,400,000	
	관서업무비	1,200,000	
경상이전	**소계**	**22,200,000**	
	배상금	200,000	
	반환금기타	22,000,000	
자산취득비	**소계**	**7,5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공기구비품)	7,510,000	
분담금	**소계**	**60,515,000**	
	분담금	60,515,000	

소 관 부 서		체육진흥과
입	과 장	김 혜 선
안	팀 장	윤 종 원
자	담 당 자	이 인 호 (480-4915)